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34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 송석준·조배숙·성일종

곽규택 · 김미애 · 이종배

이헌승 · 김선교 · 윤상현

김성원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제271조"를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图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 ⑨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		
중처벌) ① ~ ⑥ (생 략)	중처벌) ① ~ ⑥ (현행과 같		
	승)		
⑦ 「관세법」 <u>제271조</u> 에 규정	⑦ <u>제271조제1항 및</u>		
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	제2항		
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	⑧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	그 예비를 한 사람은 제1항부		
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		
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u>징역에 처한다.</u>	처벌한다.		
<u><신 설></u>	⑨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		
	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		
	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		
	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u>징역에 처한다.</u>		